

입원(임의입원)에 관한 통지

_____ 귀하

_____년 _____월 _____일

- 당신의 입원은 본인의 동의를 근거로 한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 22 조 3의 규정에 따른 **임의입원**입니다.
- 당신의 입원중, 편지나 엽서 등의 발신이나 수신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봉서에 이물질이 동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 직원의 입회하에서 본인에게 개봉받고 그 이물질은 병원이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신의 입원중,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행정기관 직원및 당신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전화·면회나,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뢰에 따른 당신의 대리인이 되고자하는 변호사와의 면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만, 그 밖의 사람과의 전화·면회에 대해서는 당신의 병상에 따라 의사의 지시로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입원중, 당신의 처우는 원칙적으로 개방적인 환경에서의 처우(야간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병원 출입이 가능한 처우)입니다. 그러나 치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신에 대한 개방처우를 제한할 경우가 있습니다.
- 당신의 입원중, 치료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신의 행동을 제한할 경우가 있습니다.
- 당신의 입원은 임의입원이므로 본인의 퇴원신청에 의해 퇴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보건 지정의사가 당신을 진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입원을 계속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입원계속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당신에게 설명하겠습니다.
- 만약 불명한 점이나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 직원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입원이나 처우에 관해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원이나 병원의 처우 개선을 지시하도록 토도후켄 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을 때는, 병원 직원에게 묻거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각 토도후켄 정신보건 복지담당과 주소·연락처)

- 병원의 치료방침에 따라서 요양에 전념하여 주십시오.

병원명
 관리자 성명
 주치의 성명

입원동의서

년 월 일

병원장 귀하

입원자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생

본인은, 「입원에 관한 통지 (입원시 고지사항)」를 숙지한 위에,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 22 조의 4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귀원에 입원할 것에 동의합니다.

입원(의료보호입원)에 관한 통지

귀하

년 월 일

1. 당신은 정신보건 지정의사의 진찰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헤이세이 년 월 일, 입원하였습니다.
2. 당신의 입원은,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33조 【①제1항 ②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보호입원**입니다.
3. 당신의 입원중, 편지나 엽서 등의 발신이나 수신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봉서에 이물질이 동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 직원의 입회하에서 본인에게 개봉받고 그 이물질은 병원이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당신의 입원중,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직원및 당신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전화·면회나,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뢰에 따른 당신의 대리인이 되고자하는 변호사와의 면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만, 그 밖의 사람과의 전화·면회에 대해서는 당신의 병상에 따라 의사의 지시로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당신의 입원중, 치료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신의 행동을 제한할 경우가 있습니다.
6. 만약 불명한 점이나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 직원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의 입원이나 처우에 관해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원이나 병원의 처우 개선을 지시하도록 토도후켄 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을 때는, 병원 직원에게 묻거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각 토도후켄 정신보건 복지담당과 주소·연락처)

7. 병원의 치료방침에 따라서 요양에 전념하여 주십시오.

병원명

관리자 성명

지정의 성명

주치의 성명

입원(응급입원)에 관한 통지

귀하

년 월 일

- 당신은 정신보건 지정의사의 진찰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헤이세이 년 월 일, 입원하였습니다.
- 당신의 입원은,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 33 조 4 의 규정에 따른 **응급입원**입니다.
- 당신의 입원중, 편지나 엽서 등의 발신이나 수신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봉서에 이물질이 동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 직원의 입회하에서 본인에게 개봉받고 그 이물질은 병원이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신의 입원중,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행정기관 직원및 당신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전화·면회나,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뢰에 따른 당신의 대리인이 되고자하는 변호사와의 면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만, 그 밖의 사람과의 전화·면회에 대해서는 당신의 병상에 따라 의사의 지시로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신의 입원중, 치료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신의 행동을 제한할 경우가 있습니다.
- 만약 불명한 점이나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 직원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의 입원이나 처우에 관해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원이나 병원의 처우 개선을 지시하도록 토도후켄 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을 때는, 병원 직원에게 묻거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각 토도후켄 정신보건 복지담당과 주소·연락처)

- 병원의 치료방침에 따라서 요양에 전념하여 주십시오.

병원명
 관리자 성명
 지정의 성명
 주치의 성명

외출 제한 통지

귀하

당신의 현재 병상으로 보아, 치료상 필요성에 따라 당분간 외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병상이 안정되면 의사의 허가에 의해 다시 외출이 자유롭게 됩니다.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의사 성명

입원계속에 따른 통지

귀하

년 월 일

1. 당신으로부터 퇴원 요청이 있었습시다만, 정신보건 지정의사에 의한 진찰결과,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되어, (오전·오후 시),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 22 조의 4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2. 당신의 입원중, 편지나 엽서 등의 발신이나 수신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봉서에 이물질이 동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 직원의 입회하에서 본인에게 개봉받고 그 이물질은 병원이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신의 입원중,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행정기관 직원및 당신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전화·면회나,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뢰에 따른 당신의 대리인이 되고자하는 변호사와의 면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만, 그 밖의 사람과의 전화·면회에 대해서는 당신의 병상에 따라 의사의 지시로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당신의 입원중, 치료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신의 행동을 제한할 경우가 있습니다.
5. 만약 불명한 점이나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 직원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의 입원이나 처우에 관해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원이나 병원의 처우 개선을 지시하도록 토도후켄 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을 때는, 병원 직원에게 묻거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각 토도후켄 정신보건 복지담당과 주소·연락처)

6. 병원의 치료방침에 따라서 요양에 전념하여 주십시오.

병원명

관리자 성명

지정의 성명

주치의 성명

